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39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김기덕 의원 (찬성 29명)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덕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명확한 용어 정의 및 공공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3.8.24.~8.28.) 결과 : 의견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안 제4제3항)

-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p>

- 경찰청¹⁾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7년 2,617건으로 이후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던 시점임을 감안할 때 2021년에 1,792건으로 증가추세로 반등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 지역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발생 현황>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 건수	2,619	2,135	2,033	1,490	1,792

- 또한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봐도 화장실 불법촬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시사저널, 2023.4.16.
날로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 무엇이 문제일까 [김동진의 다른 시선]
- 노컷뉴스, 2023.5.23.
카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그놈'...또 범행하려다 '덜미'
- 중앙일보, 2023.6.9.
끊이지 않는다...같은 날 다른 지역서 잡힌 '女 화장실 불법촬영범'
- 한겨레, 2023.6.13.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신고...인천교통공사 직원 수사
- 뉴시스, 2023.7.7.
화장실 몰카로 투숙객 불법 촬영 30대 게스트하우스 사장 '실형'
- 여성신문, 2023.7.25.
"불법촬영 재판 중 또 촬영"...화장실서 수차례 여성 촬영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 뉴시스, 2023.8.27.
'긴 머리 가발 쓰고, 앵글 잡고' 화장실 불법촬영 20대 실형

1) 경찰청,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지역별 발생현황, 2021.12.31.

-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탐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개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7.21.)에 따라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계장치 점검 의무(연2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상시점검 체계 강화가 필요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불법촬영 건수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²⁾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에서 구청장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여부에 대해 연 2회이상 정기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임.

-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내 특별점검관리대상 화장실 등 민간개방화장실 위주로 시민참여 중심의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월 2회 상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환경 인프라’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촬영기기 적발 건수는 미미한 실정으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39
----------	------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명확한 용어 정의 및 공공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가.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 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u></p>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u></p>